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의안 번호	1522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0년 5월 25일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
1. 제안이유

- 가. 국내 경제의 호경기와 불경기가 반복되면서 지방교육재정은 호경기에는 증가, 불경기에는 감소되어 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이 발생하나, 회계 연도 독립의 원칙으로 인해 연도 간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곤란함
- 나. 따라서,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그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, 세입이 부족한 해에 적립한 기금을 회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기금의 조성 재원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전입금,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 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함(안 제3조제1항)
- 나. 기금의 적립요건 및 비율은 최근 3년 평균증가율 비교 등을 통해 세입 재원이 증가한 경우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,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(안 제3조제2항)
- 다. 기금의 사용한도는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%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고 그 사용용도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의 보전, 대규모 재난·재해 대응 및 예방,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민자사업지급금(BTL)에 충당,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, 그 밖에 기금의 관리·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에 지출하도록 함(안 제4조)

라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며, 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,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등을 심의하도록 함(제6조 내지 제10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[별첨 7]

○ 「지방재정법」 제14조(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)

○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, [별첨 2])

다. 협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○ 입법예고(2020. 4. 20. ~ 5. 10.) 결과 :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[별첨 3]

○ 부패영향평가: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[별첨 4]

○ 성별영향평가: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[별첨 5]

○ 학생인권영향평가: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[별첨 6]

○ 관계법규 : [별첨 7]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금의 설치)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제3조(기금의 조성) ① 제2조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
2. 기금운용수익금
3. 그 밖의 수입금

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전입금으로 기금에 적립할 수 있다.

1. 최근 3년 평균증가율 비교 등을 통해 세입재원이 증가했다고 판단될 경우,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
2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,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

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.

1. 교육비특별회계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

2. 대규모 재난·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해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을 경우
3.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민자사업지급금(BTL)에 충당할 경우
4.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
5. 그 밖에 기금의 관리·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

제5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) 교육감은 기금을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·관리하고,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
제6조(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“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육감이 수립·작성한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
2.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
3.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
4. 기타 기금의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

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,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

1. 당연직 위원은 교육행정국장, 예산담당관, 교육시설안전과장으로 한다.
2. 위촉직 위원은 교육감이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및 지역인사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

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,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

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일시, 장소,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.

④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

제9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10조(간사)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며, 간사는 예산총괄담당사무관으로 한다.

제11조(회계공무원)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.

1. 기금운용관 : 기획조정실장
2. 기금출납원 : 예산총괄담당사무관

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

대장을 비치하고,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12조(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.

제13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따르고 그 이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첨 2】

< 별지 제2호 서식 >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제3조 관련)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‘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’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경우는 최근 3년 평균증가율 비교 등을 통해 세입재원이 현저히 증가했다고 판단되거나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을 적립하는 것으로 여유재원을 적립하는 것이므로 기금 적립을 위해 별도 재원 마련을 전제로 하지 않음

4. 작성자

-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 주무관 유정아 (02-3999-324)

【별첨 3】

< 별지 제5호 서식 >

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(제14조 관련)		
의견제출자	제 출 의 건	조 치 내 용
(교육시설과)	① 2020.12.4.시행 예정인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하여야 하는 “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” 과 일부 중복	○ 미반영 - “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” 이 설치 예정기금으로 실제 설치되기 전까지는 제정안 제4조의 기금 용도에 관한 사항은 중복되지 않고 이에 따른 교육시설안전과장의 당연직이 타당하므로 미반영
(감사관) (부패영향평가)	② 제정안 제6조 제2항의 “기금운영 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” 은 심의(운영)에 관한 사항이나 “기금운영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” 의 주체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미비	○ 미반영 - “기금운영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” 의 주체는 이미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안에 재기재하지 않음. 다만, “기금운영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” 의 행위 주체 및 심의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“교육감이 수립·작성한 기금운영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” 로 자구 수정
	③ 기금운영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중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“교육감이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및 지역인사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” 으로 포괄적으로 규정	○ 미반영 - 위촉직 위원의 구체적인 자격에 대해서는 이미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안에 재기재하지 않음
	④ 제정안 제6조 기금운영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중 위촉직 위원들의 회의 참여에 대한 제척·기피·회피 규정이 없음	○ 반영 - 위원의 회의 참여에 대한 제척·기피·회피 규정을 제9조에 반영(추가)

【별첨 4】

[별지 제3호서식]

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
(제9조제2항 관련)

자치법규명	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		
평가담당	감사관	지방교육행정주사	이지은
입안주관부서	예산담당관	통보일	2020.5.6.
관련조문	평가결과		조치사항
(전체조문) 안 제6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동 조례안은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, 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운용 시 ‘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’을 실시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함 - 그러나 본 조례 제정안에는 단지 심의위원회가 ‘기금운용 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’을 심의한다고 규정하여 해당 업무의 주체 및 절차에 대한 규율이 미비함 - 또한 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 5명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‘교육감이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및 지역인사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’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함 - 특히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에 따르면 ‘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’고 강행적으로 규정한바 반드시 3명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, ‘민간전문가 또는 지역인사’로 규정하여 위원 선정 및 위원회 운영 과정에 사적 이해관계나 과도한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있음 - 한편 위촉위원의 위원들의 회의 참여에 대한 제척·기피·회피 규정이 없어 심의·의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	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“개선권고”</u></p>

【별첨 5】

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				
관리번호	2020A서울교육008			
정책명	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			
소관부서	기관명	서울특별시교육청		
	부서명	예산담당관		
	담당자명	유정아	전화번호	02-3999-324
담당부서	기관명	서울특별시교육청		
	부서명	정책안전기획관		
	담당자명	신지은	전화번호	02-399-3910
체크리스트 제출일자	2020년 04월 24일			
완료(제외) 통보일자	2020년 04월 24일			
<p>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20년 05월 02일</p>				

【별첨 6】

**자치법규 · 단위사업
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**

자치법규 (단위사업)	서울특별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					
담당부서	예산담당관	담당자	직급	지방교육 행정주사	성명	유 정 아
평가담당	학생인권위원회 기획홍보소위원회	위원장 정병수				
해당조항	검토의견					검토결과
제1조~ 제13조	<p>- 본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제정으로 학생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됨.</p>			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원안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선권고 <input type="checkbox"/> 중단권고

관계법규

■ 「지방재정법」

[시행 2020. 1. 1.] [법률 제16857호, 2019. 12. 31., 일부개정]

- 제14조(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,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“재정안정화기금“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총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,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■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[시행 2020. 1. 1.] [법률 제16856호, 2019. 12. 31., 일부개정]

- 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**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③ ~ ④ 생략

- 제6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)** ① 기금은 세계현금(歲計現金)의 수입·지출·보관의 절차,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·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,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
③ ~ ⑥ 생략

제1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“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2.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
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■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

[시행 2015.5.22.] [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905호, 2015.5.22., 일부개정]

제7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)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기금운용심의위원회“라 한다)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, 장소, 참석자,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